

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119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8월 14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우수 인재 발굴·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및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나. 이에 서울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4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장학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대상기관: 서울장학재단

나. 추진근거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-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
- 「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다. 출연의 필요성

-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의 발굴·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및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장학재단 운영 지원을 통해,

- 저소득가정의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,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

라. 주요사업

- 중등·고등 및 대학 분야 장학생 진로활동 학업장려 장학금 지원사업
- 학교 밖 청소년 및 직업전문학교 학업활동 장학금 지원사업
- 독립유공자 후손 및 해외 교환학생 파견 장학금 지원사업
- 그밖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자체사업 및 민간기탁 장학사업
- 멘토링, 서포터즈, 아카데미 등 장학생 성장지원사업 등

마. 기관개요

- 소재지 : 마포구 마포대로 163, 2층
- 법인설립 : 2009.1.8.
- 조 직 : 사무국(2부), 정원 13명/ 현원 12명
 - 이사회 구성 : 이사 9명, 감사 2명
- 시설규모: 675 m^2 (사무공간, 회의실(3), 창고)

바. 소요예산(안) : 9,968,692천원

사. 산출근거

- 장학사업비 : 8,822,653천원
- 사무국운영비(인건비, 경비 등) : 1,146,039천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 제18조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4년도 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교육지원정책과 교육지원정책팀 전진수(☎ 2133-3913)